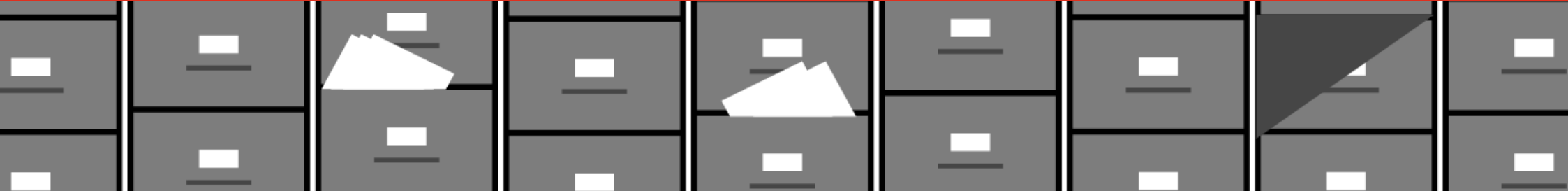


PwC 베트남 Newsletter

새로운 조세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 제정



주요 사항

2019년 7월 22일

2019년 6월, 국회는 새롭게 제정한 조세관리법 38/2019/QH14를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와 전자서류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이 새로운 법률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률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향후 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

1. 국제 협력 강화 및 이전가격에 중점을 둔 세무 리스크 관리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독립적인 거래 규정 (“*nguyên tắc giao dịch độc lập*”), 납세 의무 결정에 있어 거래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 (“*nguyên tắc bản chất hoạt động, giao dịch quyết định nghĩa vụ thuế*”),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과세가격 선정 원칙,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와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조세관리의 새로운 원칙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이 보다 증가하게 됨을 시사합니다.
- 상기의 원칙들의 이행과 동시에, 과세 당국은 세액을 간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재화 매입 및 교환 관련하여 인보이스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납세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인보이스 관련 거래가 존재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일지라도)
 -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래를 진행한 납세자의 경우
 -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 베트남 과세당국과 해외 과세당국 간 협력의 수단 및 범위는 정보 교환,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2. 전자상거래활동 / 전자세무거래 /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의 통합

전자상거래활동

- 베트남 중앙은행은 전자상거래 활동으로부터의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 통합 납부시스템의 구축 및 개발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의 과세에 있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시중 은행들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역할 수행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는 시중 은행들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인데, 실무적으로 무엇이 요구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 전자상거래활동에 있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PE) 없이 디지털 플랫폼이나 해외 공급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타 서비스에 기초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 공급자는 베트남 내 납세를 위해 등록을 하거나 납세를 위한 대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재무부(MoF)는 이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조항들의 의미와 적용에 있어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보다 일관되게 과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해외 또는 베트남 기업 각각에 법규 준수 의무를 부여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납세를 위한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항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안내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향후 공표될 예정입니다.

전자세무거래

- 전자세무거래 이행을 위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 및 과세 당국은 세무 목적상 전자적인 거래를 이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전자세무거래”는 Circular 110/2015 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조세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조세 행정 절차들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시행령 (Decree 119/2018 – 동 배경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27일 자 PwC NewBrief 참고)의 지침에 부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지침이 특정 부분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 Decree 119/2018은 2020년 11월 1일부터 모든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함을 요구하는 반면, 동 조항들은 2022년 7월 1일 (즉, 조세관리법 시행일로부터 2년 후) 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이행 시의 차질 및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조세행정절차 변동 사항

납세자에게 우호적인 일부 변동 사항:

- 납세자가 당시 과세 당국에 의해 발행된 결정/지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행정과태료 및 지연납부이자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결정/지침에 의존할 수 있는지가 덜 명확했었기에 이는 긍정적인 개선 사항입니다.
- 개인들이 제출하는 연간 개인소득세(PIT)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 보다 공정성과 균형을 위한 움직임으로, 납세자는 항소 및 소송에 따른 세금 환급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신고 기한 이후 기 제출된 세무신고 내역에서 실수가 발견된 경우, 납세자는 세무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세 당국이 해당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결정문을 발행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세무신고 제출 기한일에 과세 당국의 온라인 포털이 다운된 경우, 납세자는 온라인 포털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을 때 세무신고를 제출하고 온라인 세금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가 이미 실시되었거나 세무조사 실시 결정이 이미 공표된 연도들에 있어, 납세자는 여전히 수정된 세무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시나리오들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과세 당국은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 신청을 다루는 일정을 안내해야 하고, 환급 신청이 거절될 시 적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세무등록증명서는 3 근무일 이내에 발행되게 됩니다. (현, 10 근무일 이내 발행)

과세 당국에 우호적인 일부 변동 사항:

- 납세자가 행정적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세 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결정된 세액이 추후 항소/소송이 있을 때까지 납부되어야 하는 현 상태를 뒷받침합니다. (임시조치 또는 강제명령구제안을 받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종업원이 세금을 미납부한 경우, 해당 회사의 법인장이 베트남으로부터의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조세 심사청구 또는 및 항소를 진행할 시, 납세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세액, 벌과금, 지연납부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 조세관리법은 세액 자체가 납부되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 세액, 벌과금, 지연납부이자를 포함한 전액의 납부가 강제됩니다.





기타 변동 사항:

- 세무조사(Tax Audit)에는 두 가지 종류 (Tax Inspection 및 Tax Examination)가 있습니다. Tax Inspection의 경우 기간이 비교적 길고 특정한 사안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데 비해, Tax Examination은 기간이 비교적 짧고,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tax examination의 최대 기간이 5 근무일에서 10 근무일로 증가됩니다.
- 새로운 법률은 tax inspections 관련 일정/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검사법(Law on Inspection) 및 특정 실행 규정 상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전 inspection의 결과 보고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재조사(Re-inspection)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원유를 판매하는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와 로열티가 판매일로부터 35일 이내(국내 판매의 경우), 세관 신고일로부터 35일 이내(수출 판매의 경우) 납부되어야 합니다. 현 석유 및 가스 관련 규정에서는 납부 기한이 국내 판매 및 해외판매 공히 판매일 (배송지에서 원유 판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ontact us

본 Newsletter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Tax and Legal Services



Nguyen Huong Giang
Partner
+84 24 3946 2246 Ext. 1502
n.huong.giang@pwc.com



Richard Irwin
Partner
+84 28 3823 0796 Ext. 4880
r.j.irwin@pwc.com

Korean Business Services



Kim Hyung Joon (김형준)
Director, KICPA
+84 28 3823 0796 Ext. 1016
kim.hyung.joon@pwc.com



Lee Moo Yeol (이무열)
Senior Manager, KICPA
+84 24 3946 2246 Ext. 1010
mooyeol.lee@pwc.com



Jo Su Jin (조수진)
Associate
+84 28 3823 0796 Ext. 4630
jo.sujin@pwc.com

www.pwc.com/vn



facebook.com/pwcvietnam



youtube.com/pwcvietnam



linkedin.com/company/pwc-vietnam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8 countries** with over **250,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

©2019 PwC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structure.